

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FAQ

('22.2.9.(수),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, 043-719-2189)

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영업자 등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그간의 민원 질의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응답 내용이며, 추후 관련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 등에 따라 안내 내용이 변경·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Q1. '소비기한'이란?

-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.

* 영문명 예시 : Use by date

Q2.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?

-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·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,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.

Q3.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의 주요 유의점은?

-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,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됩니다.

Q4.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는?

- 현행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나,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

있어 왔고,

- 국제식품규격위원회(CODEX)·유럽·미국·일본·호주·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낭비 감소,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.

Q5.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은?

- 소비기한 표시제는 **2023년 1월 1일부터** 시행됩니다.
 - 시행일 이후 제조·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
- 다만, 총리령으로 정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품목은 시행일로부터 **8년의 범위**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 가능하며,
 -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우유류(냉장보관 제품),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은 2031년 1월 1일로 개정하는 내용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을 입법예고(21.11.5)한 바 있습니다.

Q6. 소비기한 표시 시행일의 유예기간을 더 부여할 수 없는지?

- 해당 개정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발의하여 시행일 등 다양한 방안을 심의하여 시행일을 **2023년 1월 1일로 최종 확정**하여 개정·공포(21.8.17)한 것으로써 시행 일자가 변경되거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
- 따라서, 시행 일자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여야 합니다.

Q7. 소비기한을 시행일 이전에 미리 적용하여 표시할 수 있는지?

- 시행일 이전('22.12.31)까지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기한을 미리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.

Q8. 시행일 이전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해도 되는지?

- 시행일 이전('22.12.31)까지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고, 자율사항으로 소비기한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은 영업자 책임하에 가능하나 소비자 오인·혼동 우려 등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.

Q9.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?

-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**현행 유통기한 표시 대상**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됩니다.

Q10.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?

- **현행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합니다.**
 - * ① ○○년○○월○○일까지, 소비기한: 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, ② 제조일로부터 ○○월까지(제조일 별도 표시), 소비기한: 제조일로부터 ○○일, ③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위치 명시 등

Q11. 소비기한 설정 방법은?

- 포장재질과 제조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·냉동 등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, 이를 통해 도출된 “품질안전한계기간”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.
 - ※ 품질안전한계기간 :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한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임
- 통상적으로 “품질안전한계기간”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은 기존의 유통기한 설정실험과 동일하나,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유통기한보다 좀 더 깁니다.
 - ※ 유통기한의 안전계수는 통상 0.6~0.7을 적용하나, 소비기한은 0.8~0.9로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설정함 [소비기한 = 품질안전한계기간 × 안전계수]

Q12. 소비기한 표시 시 기존 유통기한 날짜 표시를 그대로 따라도 되는지?

- 소비기한 도입 취지에 맞도록 품질안전한계, 유통실정, 제품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기준에 따라 새롭게 설정하여야 합니다.
 - 다만, 소비기한 개념, 설정 기준, 시행일의 긴급성, 포장지 재고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 책임하에 기존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그대로 설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, 추후 설정실험 등을 통해 기한 연장 등 재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
Q13. 2023년 1월 1일 이후에도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?

- 관할 허가(등록 또는 신고)관청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'유통기한'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'소비기한'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- 다만, 날짜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Q14. 소비기한 적용 시 품목제조보고 변경사항에 해당 되는지?

-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함에 따라 날짜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품목제조변경보고를 하여야 합니다.
- 다만,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동일하고,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단순히 표시만 변경하는 경우는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*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등의 관련 명칭 등 일괄 수정

Q15. 소비기한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은?

- 현행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*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,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, 소비기한을 연장한 경우,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 등

**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(안) 입법예고('21.11.5)

Q16. 소비기한 설정 관련 추가 진행 상황은?

- 소규모영업자 등의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200개 식품 유형에 대하여 권장소비기한을 설정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.

* 권장소비기한: 별도 설정 실험없이 권장소비기한 이내 범위에서 소비기한 자율 설정 가능

Q17. 'EXP', 'Sell by date'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?

- 수출국가에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 'Expiration date', 'Sell by date'가 표시된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.
 - 다만, 소비기한 설정 기준이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 개정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Q18. 'Best before'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?

- 현재 '품질유지기한(Best before)'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경과 후에도 섭취가 가능하여 우리나라는 잼류, 당류, 장류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.
 - 수출국에서 'Best before'로 표시되었으나,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.